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성군의회의회장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재난 예방·복구 임무 및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최일선 현장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일방적·권위적인 복무 규정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문언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장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명, 안 제1조)
- 나.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을 이장의 임무로 추가함(안 제2조 제2항제7호)

- 다. 권위적인 복무 조항을 수평적·협력적 문언으로 정비하고 사무
인계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 라. 재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제3항)
- 마.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이장의 직무수행 관련 편의
제공 사항을 현실화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법인이나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

-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2) 연락처: (055)670-5763, 팩스 (055)670-5759, 이메일: ssg1016@korea.kr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실비변상”을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리”를 “행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리를”을 “행정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리의”를 “행정리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제3조제1항 중 “리”를 “행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를 “읍·면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상”으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질되었을 때에는”을 “교체되었을 경우”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부를 작성하여”를 “사무인수·인계서는”으로, “보관한다”를 “보관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비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편의 제공)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공부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u>	<u>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 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u>실비변 상</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원</u> --- ----- -----.
제2조(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u>리</u> 구역안에서의 읍 . 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 당한다. ②이장은 <u>리</u> 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 1 032> 1. (생 략) 2. <u>리의</u> 발전을 위한 자주적 . 자율적 업무처리 3.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이장의 임무) ① ---- <u>행정</u> <u>리</u> ----- . ----- ----- ----. ② --- <u>행정리를</u> ----- ----- . ----- ---
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 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 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u>리</u>	제3조(복무) ① ----- ----- ----- <u>행</u>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1032>

③ (생략)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 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지급) ①·② (생략)

<신설>

제5조(편의 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

정리 -----.

② -----
----- 읍·면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상 -----
----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교체되었을 경우 -----
-----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 . ----- 사무인수·인계서는 -----
-----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 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 제공)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공부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필

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4조(수당 등) 제3항

나. 비용발생 요인: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다. 소요예산: 연간 106,000천 원(도비 42,400천 원, 군비 63,600천 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고성군 이장 265명

2) 사업규모: 연간 106,000천 원(도비 42,400천 원, 군비 63,600천 원)
- 265명 × 40만원(분기별 10만원)

※ 도비와 군비의 분담 비율은 경상남도의 확정 통보에 따라 조정하며,
이 비용 추계는 도비 40%, 군비 60%를 가정하여 산정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 계
총 비용	106,000	106,000	106,000	106,000	106,000	53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 계
재원						
의존재원	42,400	42,400	42,400	42,400	42,400	212,000
자체재원	63,600	63,600	63,600	63,600	63,600	318,000
조달						
기 타	-	-	-	-	-	-
소 계	106,000	106,000	106,000	106,000	106,000	530,000

작성자: 행정과장 정영랑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재난특별활동비) 도지사는 이장·통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주 소 :
- 연 락 처 :
- 의견 내용(찬·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이유
	찬성	반대		